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49

발의연월일: 2021. 1. 26.

발 의 자: 강선우·고영인·김홍걸

남인순・양향자・이규민

전혜숙 · 정춘숙 · 허종식

홍성국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「아동복지법」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,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근거가, 「아동복지법」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,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입소할 수밖에 없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

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11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9조의13제2항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11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장애아동학대(장애인학대 중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말한다) 예방 및 장애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(이하"피해장애아동"이라 한다)의 보호를 위한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력체계 구축
- 5. 장애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9조의13의 제목 중 "쉼터"를 "쉼터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쉼터"를 "쉼터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전용 쉼터"로 한다.
  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장애아동전용 쉼터를 설치·운

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	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
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지역	의 설치 등) ①
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	
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	
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	
치・운영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장애아동학대(장애인학대 중
	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
	에 따른 아동인 장애인에 대
	한 학대를 말한다) 예방 및
	장애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
	를 입은 장애아동(이하 "피
	해장애아동"이라 한다)의 보
	호를 위한 「아동복지법」
	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
	보장원과의 협력체계 구축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	②
발견・보호・치료하고 장애인	
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	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 별자치도에 둔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5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 (생 략)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장애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제2항 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 협력체계 구축
-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 지사는 피해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장애아동전용 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-----쉼터 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전용 쉼터-----